

■ 동물보호법 시행령 [별표 1]

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·장착 방법(제10조제3항 관련)

1.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

- 가. 검역본부장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.
- 나.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되,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표준규격에 맞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.
- 다.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배정·부여한다. 이 경우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범위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한다.
- 라.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,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삽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.

2. 무선식별장치의 규격

- 가.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-코드구조(KS C ISO 11784: 2009)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) 구성: 총 15자리(국가코드3 + 개체식별코드 12)

2) 표시

코드종류	기관코드 (5-9비트)	국가코드 (17-26비트)	개체식별코드 (27-64비트)
KS C ISO 11784	1	410	12자리

가) 기관코드(1자리): 농림축산식품부는 “1”로 등록하되, 리더기로 인식(표시)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

나) 국가코드(3자리): 대한민국을 “410”으로 표시

다) 개체식별코드(12자리):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배정한 번호체계

나.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.

1) 「산업표준화법」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-코드구조(KS C ISO 11784: 2009)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-기술적개념(KS C ISO 11785: 2007)에 따

를 것(국제표준규격 ISO 11784: 1996, ISO 11785: 1996을 포함한다)

2)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1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

3)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될 것

3.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방법

가.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(皮下: 진피의 밑부분부터 근육을 싸는 근막 윗부분까지를 말한다)에 삽입한다.

나.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.

4.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, 동물등록번호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